

2021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달라지는 사항

□ 개정 사유

-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업 추진 및 운영실태 점검 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집행 효율 제고 및 효율적인 융자사업을 도모하고자 함

□ 주요 변경사항

○ 공통사항

- 산림조합·농협·수협 상근 임직원, 공무원, 교사,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에 공무원, 임기제 공무원, 시간선택제 공무원,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하고 지방공기업을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
-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계좌당 대출잔액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50% 이상 표본조사를 통해 경영실태조사 실시

○ 임야매입자금(전문임업인기반조성, 귀산촌인창업자금)

- 농림지역 등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임야의 경우 지상권 설정 생략 가능

○ 귀산촌인창업자금

- 창업자금 사업대상자의 나이 기준을 신청일에서 신청연도로 변경 (1955. 1. 1. 이후 출생인 자)

○ 임업인경영자금

- 재해피해를 받은 임가에 종자, 자재, 노임 등의 산림경영비를 융자 지원하는 재해대책경영자금 신설(붙임1)

○ 「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」에 의거, 별지서식 추가

□ 세부 변경사항

사업명	현행	변경	변경사유
제1편 일반사항			
제4장. 산림사업종합자금 공통사항			
II. 사업시행 주요내용			
2 지원제외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조합·농협·수협 상근 임직원, 공무원, 교사,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* 대출 신청시 직업보유 사실 확인은 산림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업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(단, 만 65세 이하에 한함) * 다만,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는 확인을 생략함 *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'알리오'에서 확인 가능(www.alio.go.kr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조합·농협·수협 상근 임직원, 공무원, 교사,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* 공무원, 임기제 공무원,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도 정규직 근무자에 포함 *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, 계약기간 중에는 대출신청 불가하며, 계약기간 만료 후 대출신청 가능 * 대출 신청시 직업보유 사실 확인은 산림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업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(단, 만 65세 이하에 한함) * 다만,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는 확인을 생략함 *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'알리오(www.alio.go.kr)' 및 '클린아이(www.cleaneye.go.kr)'를 참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출취급기관, 공공기관, 공직자 등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지원제의 대상 구체화 ○ 지방공기업을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
III. 사업추진체계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			
4. 정산 및 사후관리 단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조합은 사업 실시여부 및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·점검 실시 -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계좌당 대출잔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 연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산림청에 보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조합은 사업 실시여부 및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·점검 실시 -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계좌당 대출잔액이 7천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 연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산림청에 보고 * 단,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계좌당 대출잔액이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50% 이상(수소점 비율) 표본조사 실시하되, 모든 대상이 3년 내 1회 이상 조사되어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산림조합 경영실태조사 업무 과중을 고려하여, 실태조사 기준금액 완화
제2편 세부사업별 집행지침			
제2장. 전문임업인기반조성(산림경영기반조성)			
II. 사업시행 주요내용			
2. 지원자격 및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제의 대상 - 산림조합·농협·수협 상근 임직원, 공무원, 교사,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* 대출 신청시 직업보유 사실 확인은 산림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업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(단, 만 65세 이하에 한함) * 다만,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는 확인을 생략함 *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'알리오'에서 확인 가능(www.alio.go.kr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제의 대상 - 산림조합·농협·수협 상근 임직원, 공무원, 교사,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* 공무원, 임기제 공무원,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도 정규직 근무자에 포함 *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, 계약기간 중에는 대출신청 불가하며, 계약기간 만료 후 대출신청 가능 * 대출 신청시 직업보유 사실 확인은 산림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업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(단, 만 65세 이하에 한함) * 다만,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는 확인을 생략함 *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'알리오(www.alio.go.kr)' 및 '클린아이(www.cleaneye.go.kr)'를 참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출취급기관, 공공기관, 공직자 등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지원제의 대상 구체화 ○ 지방공기업을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

사업명	현행	변경	변경사유
※ 임야매입·임차자금 지원(임야거래활성화 사업) 제한사항	<p>③ 가족(배우자, 동일세대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·형제·자매)간의 거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(‘21년 <u>대출신청분부터 적용</u>)</p> <p>⑦ 대상자 선정 이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임야거래·임차계약서를 지역산림조합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, 해당 대출금 수령 불가 및 향후 2년간 임야매입자금 지원 제한(‘21년 <u>대출신청분부터 적용</u>)</p>	<p>③ 가족(배우자, 동일세대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·형제·자매)간의 거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</p> <p>⑦ 대상자 선정 이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임야거래·임차계약서를 지역산림조합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, 해당 대출금 수령 불가 및 향후 2년간 임야매입자금 지원 제한</p>	<p>○ ‘20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지침 개정</p> <p>○ ‘20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지침 개정</p>
※ 임야매입·임차자금 지원(임야거래활성화 사업) 유의사항	<p>① 대출 이후 임야를 5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지역산림조합장은 사업대상자에게 아래사항을 적용하여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등기부 등본상 매매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임야매입자금 대출신청 제한. 사업대상자는 대출신청 시 5년간 지원 제한됨을 확인 후 서명하여야 하며, 토지수용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임야처분이 불가피할 경우,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만 대출신청 가능(‘20년 9월 <u>대출신청분부터 적용</u>) <p>⑤ 해당 임야가 2개 지역 이상에 걸쳐있을 경우 면적비율에 따라 대출기간 결정</p>	<p>① 대출 이후 임야를 5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지역산림조합장은 사업대상자에게 아래사항을 적용하여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등기부 등본상 매매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임야매입자금 대출신청 제한. 사업대상자는 대출신청 시 5년간 지원 제한됨을 확인 후 서명하여야 하며, 토지수용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임야처분이 불가피할 경우,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만 대출신청 가능 <p>⑤ <삭제></p>	<p>○ ‘20년 임야매입자금 집행의 혼란방지를 위해 명시한 문구 삭제</p> <p>○ 임업인의 편의를 고려하여, 임야 면적비율이 낮은 사군의 산림조합에서도 대출신청이 가능토록 변경</p>
4. 정산 및 사후관리	○ <신설>	<p>○ 임야매입자금에 대한 지상권 설정 시 농림지역 등 건축행위 등이 허가될 우려가 없어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산림조합장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상권 설정을 생략할 수 있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본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상권 관련사항은 「민법」 및 「여신업무방범법」 적용 	<p>○ 농림지역 등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임야인 경우, 지상권을 생략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임업인의 자율적 임업활동 지원</p>

제6장.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

II.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	○ 산촌(참고5)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,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(단,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)	○ 산촌(참고5)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,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	○ 농림축산식품부 유사사업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, 만 나이 기준 완화
<p>- (창업자금) 대출신청자는 주소지 이전(전입)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, 이주할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</p> <p>- (정착자금)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(목조주택 포함) 대출 예정인 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을 증명하여야 함</p> <p>*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고 대출금 수령 후 주소지 이전을 완료</p> <p>- 주택구입,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</p>	<p>- (창업자금) 대출신청자는 주소지 이전(전입)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, 이주할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</p> <p>*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(1955. 1. 1.이후 출생인 자)</p> <p>- (정착자금) 주택자금(목조주택 포함) 대출 예정인 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을 증명하여야 함</p> <p>* 주택구입,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</p>	<p>- (창업자금) 대출신청자는 주소지 이전(전입)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, 이주할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</p> <p>*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(1955. 1. 1.이후 출생인 자)</p> <p>- (정착자금) 주택자금(목조주택 포함) 대출 예정인 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을 증명하여야 함</p> <p>* 주택구입,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</p>	<p>○ 농림축산식품부 유사사업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, 만 나이 기준 완화</p>

사업명	현행	변경	변경사유
2. 지원자격 및 요건	<p>○ (교육이수 실적) 산림청, 농림축산식품부(농정원 포함),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(승인·공모·협업·위탁)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육(농업·임업·귀산촌·귀농·귀촌 교육 등)을 최근 5년 이내(신청일 기준)에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(‘21년 부터는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)</p> <p>- 상기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의 50%를 최대 20시간 까지 인정 (산림교육원, 농업교육포털 교육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사이버 교육에 한함)</p> <p>○ 지원제의 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업분야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사업자 선정이후 자금을 지원받았으나, 밀령기간 내 퇴직이나 사업자 등록 이전·말소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(‘19년 선정된 자에 한해 적용, ‘21년부터 삭제) <p>○ 지원제의 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(專業的) 직업을 가진 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* 단, ①농·수산업 결합, ②임업(농업 포함) 외 연소득 3,700만 원 미만인 자는 사업대상자에 포함 * 임업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중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의 경우, 2년 이내에 퇴직을 전제로 할 경우 연소득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나, 귀산촌을 한 이후에는 적용을 받음 * 목조주택 자금은 연소득을 제한하지 않음 	<p>○ (교육이수 실적) 산림청, 농림축산식품부(농정원 포함),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(승인·공모·협업·위탁)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육(농업·임업·귀산촌·귀농·귀촌 교육 등)을 최근 5년 이내(신청일 기준)에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</p> <p>- 상기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의 50%를 최대 30시간 까지 인정 (산림교육원, 농업교육포털 교육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사이버 교육에 한함)</p> <p>○ 지원제의 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삭제> <p>○ 지원제의 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(專業的) 직업을 가진 자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로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,700만원 이상인 자 * 농업 인정범위 - ①임업(농업 포함), ②농업 결합, ③수산업 결합 * 타산업 분야의 전업적 직업으로 연소득 3,700만원 이상인 자도 대출신청은 가능하나, 대출금 수령 전까지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말소 처리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 수령 불가 * 목조주택 자금은 연소득을 제한하지 않음 	<p>○ ‘20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지침 개정</p> <p>○ ‘20년 임야매입자금 집행의 혼란방지를 위해 명시한 문구 삭제</p> <p>○ 해당문구 구체화</p>
※ 임야매입·임차자금 지원(임야거래활성화 사업) 제한사항	<p>③ 가족(배우자, 동일세대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·형제·자매)간의 거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(‘21년 <u>대출신청분부터 적용</u>)</p> <p>⑦ 대상자 선정 이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임야거래·임차계약서를 지역산림조합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, 해당 대출금 수령 불가 및 향후 2년간 임야매입자금 지원 제한(‘21년 <u>대출신청분부터 적용</u>)</p>	<p>③ 가족(배우자, 동일세대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·형제·자매)간의 거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</p> <p>⑦ 대상자 선정 이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임야거래·임차계약서를 지역산림조합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, 해당 대출금 수령 불가 및 향후 2년간 임야매입자금 지원 제한</p>	<p>○ ‘20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지침 개정</p> <p>○ ‘20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지침 개정</p>
※ 임야매입·임차자금 지원(임야거래활성화 사업) 유의사항	<p>① 대출 이후 임야를 5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지역산림조합장은 사업대상자에게 아래사항을 적용하여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등기부 등본상 매매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임야매입자금 대출신청 제한. 사업대상자는 대출신청 시 5년간 지원 제한됨을 확인 후 서명하여야 하며, 토지수용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임야처분이 불가피할 경우,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만 대출신청 가능(‘20년 9월 <u>대출신청분부터 적용</u>) 	<p>① 대출 이후 임야를 5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지역산림조합장은 사업대상자에게 아래사항을 적용하여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등기부 등본상 매매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임야매입자금 대출신청 제한. 사업대상자는 대출신청 시 5년간 지원 제한됨을 확인 후 서명하여야 하며, 토지수용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임야처분이 불가피할 경우,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만 대출신청 가능(‘20년 9월 <u>대출신청분부터 적용</u>) 	<p>○ ‘20년 임야매입자금 집행의 혼란방지를 위해 명시한 문구 삭제</p>

사업명	현행	변경	변경사유
	⑤ 해당 임아가 2개 지역 이상에 걸쳐있을 경우 면적비율에 따라 대출기관 결정	⑤ <삭제>	○ 임업인의 편의를 고려하여, 임야 면적비율이 낮은 시·군의 산림조합에서도 대출신청이 가능토록 변경
4. 정산 및 사후관리	○ <신설>	○ 임야매입자금에 대한 지상권 설정 시 농림지역 등 건축행위 등이 허가될 우려가 없어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산림조합장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상권 설정을 생략할 수 있음 * 본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상권 관련사항은 「민법」 및 「여신업무방범서」 적용	○ 농림지역 등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임야인 경우, 지상권을 생략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임업인의 자율적 임업활동 지원

제7장. 단기산림소득지원

II. 사업시행 주요내용

8-가. 임산물 생산 2. 지원자격 및 요건	○ 임산물 생산 및 운영 - <신설>	○ 임산물 생산 및 운영 - 임산물을 생산·운영하는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	○ 임산물 생산 및 운영에 관한 용자 지원내용 구체화
8-가. 임산물 생산 4. 사용용도 및 범위	○ 임산소득증대를 위한 시설 장비 및 재배·운영에 필요한 자금 - (임산물 생산 및 운영) 임산물 생산 및 운영자금은 2011년도 이상기후(고온현상)로 피해를 입어 곳간 생산 및 운영자금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 후 자금을 지원하거나, 2015년도 고온다습 등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 및 단체는 시·군 등에 피해대장을 확인 후 지원	○ 임산소득증대를 위한 시설 장비 및 재배·운영에 필요한 자금 - (임산물 생산 및 운영) 임산소득증대를 위한 임산물 생산자금 및 운영자금 * '11년 이상기후(고온현상) 곳간 피해자금 재대출의 경우, '11년도 대출받은 사실 확인 후 자금지원 * '15년 고온다습 등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 및 단체 대출의 경우 시·군 등에 피해대장을 확인 후 지원	○ 임산물 생산 및 운영에 관한 용자 지원내용 구체화

제12장. 임업인경영자금 지원

III. 사업추진체계

	○ <재해대책자금 신설> - 본문 참고		
2. 지원자격 및 요건	○ 지원제의 대상 -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(專業的) 직업을 가진 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* 단, ①농수산업 겸업, ②임업(농업 포함) 외 연소득 3,700만 원 미만인 자는 사업대상자에 포함	○ 지원제의 대상 -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(專業的) 직업을 가진 자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로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,700만원 이상인 자 * 농업 인정범위 : ①임업(농업 포함), ②농업 겸업, ③수산업 겸업	○ 해당단구 구체화

사업명	현행	변경	변경사유
2. 지원자격 및 요건	○ 지원제의 대상 - 산림조합·농협·수협 상근 임직원, 공무원, 교사,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* 대출 신청시 직업보유 사실 확인은 산림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업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(단, 만 65세 이하에 한함) * 다만,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는 확인을 생략함 *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'알리오'에서 확인 가능(www.alio.go.kr)	○ 지원제의 대상 - 산림조합·농협·수협 상근 임직원, 공무원, 교사,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* 공무원, 임기제 공무원,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도 정규직 근무자에 포함 *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, 계약기간 중에는 대출신청 불가하며, 계약기간 만료 후 대출신청 가능 * 대출 신청시 직업보유 사실 확인은 산림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업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(단, 만 65세 이하에 한함) * 다만,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는 확인을 생략함 *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'알리오'(www.alio.go.kr) 및 '클린아이'(www.cleaneye.go.kr)를 참고	○ 대출취급기관, 공공기관, 공직자 등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지원제의 대상 구체화 ○ 지방공기업은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

제3편 제출서류 및 서식

I.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

제출서류	○ 본문 참고		○ 「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」 개정에 따라 제출서류 현행화
산림사업종합자금 자금운용실적	○ <신설>	○ 별지 제1호 서식	○ 「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」제6조제2항에 의거, 별지서식 추가
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 상담기록부	○ <신설>	○ 별지 제2호 서식	○ 「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」제7조제2항에 의거, 별지서식 추가
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	○ [서식1-1]~[서식1-3] 사업신청서 ○ [서식2-1]~[서식2-6] 사업계획서 ○ [서식3] 대출신청자료	○ 별지 제3호 서식	○ 「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」제8조제1항에 의거, 별지서식 대호 변경
사업성검토서	○ <신설>	○ 별지 제4호 서식	○ 「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」제8조제4항에 의거, 별지서식 추가
신용조사서	○ <신설>	○ 별지 제5호 서식	○ 「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」제8조제4항에 의거, 별지서식 추가
지원대상자 변경에 관한 협약서	○ <신설>	○ 별지 제6호 서식	○ 「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」제11조제1항에 의거, 별지서식 추가
경영성검토서 경영일지	○ [서식4] 경영장부, 경영일지	○ 별지 제7호 서식	○ 대출신청자의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귀산촌인창업자금 임야매입자금의 사업계획서 서식 및 예시 구체화

제4편 참고자료

참고외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	5. 교육이수실적 A : 100시간 이상 B : 80시간 이상 C : 60시간 이상 D : 40시간 이상 * 교육 이수 실적 40시간 미만은 0점	5. 교육이수실적 A : 120시간 이상 B : 100시간 이상 C : 80시간 이상 D : 60시간 이상	○ 교육이수시간 60시간으로 변경함에 따라 심사기준 현행화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